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22. 11. 22. 규정 제31호

(일부개정) 2026. 3. 3. 규정 제6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고 공단의 재산보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공단이 수행·관리하는 도급·용역·위탁 및 하도급 업무를 포함하여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3.>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단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공단의 방문객 및 출입자, 위탁업체의 전 직원에게도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이사장’이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의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 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6. 3. 3.>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관리감독자’란 공단 직제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서 부서장(팀장)을 말한다.

11. ‘안전관리’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정한 상태나 조건 또는 활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12. ‘보건관리’란 직원의 건강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저해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13. ‘관련법’이란 법에 따라 제정·공포된 시행령, 규칙 등 관련법을 말한다.
14. ‘주관부서’란 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업무의 우선) ① 공단의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예산·인력·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기계설비 등 근로환경에 대한 시정·개선이 필요한 경우 공단은 우선적으로 지원 또는 조치하여야 하며, 예산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예방 책임과 의무) 이사장과 전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은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단의 전 직원은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사장 및 안전·보건 관계자가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제6조(하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① 공단은 도급·용역·위탁 또는 하도급 사업장(이하 “도급 등 사업장”이라 한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 착수 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거나, 수급인이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

② 공단은 도급 등 작업 착수 전 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 조치, 비상대응, 연락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

③ 도급 등 사업장은 공단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 3. 3.>

④ 공단은 도급 등 사업장이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부 절차, 서식 및 기록관리 기준은 이사장이 정하는 「도급·용역 안전보건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6. 3. 3.>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7조(안전보건관리 조직) ① 이사장은 공단의 직제를 통하여 안전보건 관리에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②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필요한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2(안전보건 전담직원의 전보제한 등) ① 공단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등 안전보건 전담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담직원”이라 한다)의 전문성 및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전담업무 부여(선임·지정) 후 2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징계, 직무수행 부적정 등 인사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본인의 전보 희망 또는 건강상 사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2년 이내에 전보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공단은 안전보건 전담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훈련

기회 제공, 자격 취득 지원 및 승진 가점 부여 등 필요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3. 3.]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공단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단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집행
10. 위험성평가 실시 및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 설정

13.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지정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

⑤ 공단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용역 등으로 다수의 수급인이 동시에 작업하는 장소를 관리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3. 3.>

제9조(관리감독자) ① 공단은 경영조직에서 업무상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공단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관리감독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시설, 장비,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의 선임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10조(안전관리자) ① 공단은 관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안전관리자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이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안전에 관련되는 방호장치, 보호구,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7.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업무수행 내용의 보고서 작성 등 기록·유지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0. 그 밖에 안전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공단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때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본다.

제11조(보건관리자) ① 공단은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보건관리자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선임된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이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과의 직무(「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에 한함)

6.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7. 공단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와 조언(보건분야)
12. 관련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3. 업무수행 내용의 보고서 작성 등 기록·유지
14.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5.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공단은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때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을 보건관리자로 본다.

제12조(산업보건역) ① 공단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역을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역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애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공단이 선임할 수 있는 산업보건역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거나 위촉한다.

④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기관에 위탁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역의 업무도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 3 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각종 안전보건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 ②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공단 이사장과 이사장이 위촉하는 부서의 장, 산업안전·보건 대행업체 감독자 등으로 한다.
-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 ④ 간사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로 하며,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관련법에 따라 최초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노사협의회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결과 등의 처리) ① 공단은 이 규정의 제14조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②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공단과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사내 게시판 게시
2. 공단 자체 정례조회 시 집합교육 등에 의한 방법
3. 그 밖의 적절한 방법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6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실시 대상 및 책임에 따라 사내 안전·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내 안전·보건교육은 공단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교육대상에 따라 정기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④ 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단 내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⑤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제17조(책임) ① 전 직원은 교육대상에 따라 해당되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계획된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불참사유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담당자는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안전·보건교육에 불참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18조(정기교육) ① 공단은 소속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간

가.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2. 교육내용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관리감독자 교육) 공단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정기교육 이외에 별도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공단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작업배치 전 해당 업무 또는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간
 - 가.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 나.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2. 교육내용
 - 가.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나.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다.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라.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은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배치 전 해당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의 1 라목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0조(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 따른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교육강사) 사내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4. 산업보건의(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 의사)
5. 관리감독자로서 제19조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6.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7.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의 자격 소지자
8.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교육방법) 공단은 사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 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집체교육 : 교육장 또는 식당 등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 (시설 또는 근무 장소 제외)에서 실시하는 교육
2. 현장교육 : 공단 내 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3. 인터넷 원격교육 : 전산망을 이용하여 교육실시자가 격지 간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4. 위탁교육 :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제24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공단에 선임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자체선임의 경우에 한정)

3. 보건관리자(자체선임의 경우에 한정)

제25조(교육주기 등) 제24조에 따른 직무교육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수행에 관한 신규교육을 받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교육담당자) 공단의 안전·보건교육 담당자(이하 “교육담당자”라 한다)는 안전 또는 보건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27조(교육계획의 수립) 공단의 교육담당자는 매년 12월중에 익년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교육관계 서류 보존) 교육담당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9조(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매년 12월 중에 익년에 실시할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 및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진행사항을 알게 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에서는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조치)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가스,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예방 조치

② 공단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5. 전염병·감염병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현장
6. 그 밖에 사고 및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현장

③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른다.

제31조(안전·보건진단) ① 공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등) ① 공단은 사용 중인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목록을 작성·관리하고,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위험부위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설치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3.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4.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의 종류 및 방호장치는 다음과 같다.

1.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 :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종류 및 방호장치는 관련법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3조(성능유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32조에 따른 방호 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상시 점검

및 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제34조(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조치) ① 근로자는

제32조에 따른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 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을 것
2. 방호 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 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할 것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5조(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방호구(“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라한다.)를 제조하는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관련법에 따른다.

②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이라한다)을 제조 하는 때에는 이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된 절차 등은 관련법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때에는 안전인증 대상 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관련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 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의무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아니한다.

제36조(안전검사) ① 공단은 작업장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위험기계·기구 중 법 제93조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② 검사신청은 검사주기 만료 30일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사 주기

1.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2. 정기적으로 매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제37조(안전기준 및 작업지침) ① 사업장 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규칙」을 기초로 하여 각종 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 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작업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기준에 의한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라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작업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의 신규도입 또는 작업시설을 변경할 때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④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이주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제38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공단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공단은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9조(작업중지) ① 공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동일 작업에 대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또는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 확산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팀장)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안전·보건관리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및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항상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사항을 보고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지시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제41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공단은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소방점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 공단에서 규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관계규정·기준·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관리감독자는 제3항의 각 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한다.

⑤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2조(교통재해 예방) ① 공단의 업무를 위해 도로를 주행하는 공단 소속의 모든 차량은 「도로교통법」 등의 관련법을 준수하고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 및 이용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 및 이용시설 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 또는 확보되어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이용하여 이동하여야 한다.

제43조(비상조치계획)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및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피 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 발생 시 또는 비상 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대피 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9.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③ 비상대비 및 대응 내용에는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44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공단은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제45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공단은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공단 내부 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6장 보건관리

제46조(건강진단의 구분) ① 공단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제47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 공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2 및 23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규칙 제202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 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 진단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건강진단 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배치전 건강진단

나. 배치전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

⑤ 공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정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8조(진단결과의 조치) ① 공단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2.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 결과표

②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조치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가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제출한 건강진단 증명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9조(작업환경측정) ① 공단은 「규칙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주기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50조(측정결과의 조치) ① 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즉시 해당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49조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한 때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시료

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유해물질 취급부서) ① 공단은 「안전보건규칙 별표12」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을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으로 지정하고, 동 작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하며,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사람을 출입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2조 (유해물질 표시) ① 보건업무담당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쉽게 게시하거나 취급하는 유해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1. 명 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 및 긴급 방재요령

제53조(보호구착용 작업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위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장갑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8. 유기용제 및 분진 취급 작업 :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9.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송기마스크
10.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 작업 : 귀마개, 귀덮개 등 청력보호구
11. 진동작업 :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
12. 기타 해당 관리감독자가 보호구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에 대한 적정 보호구

②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과거의 소모 실적과 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지급 주기를 정하고 부서별로 작업 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구매하여 확보토록 하되, 보호구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구매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따라 지급된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지정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보호구를 지급한 때에는 보호구의 명칭, 지급일자, 안전인증번호, 보호구 수량, 지급자명, 수령자명 등을 기록한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별로 비치하고 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⑤ 해당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하여 보수하게 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⑥ 지급된 개인 보호구는 질병감염 우려가 없도록 다수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사용케 해서는 안 되며, 개인 보호구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부서장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해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작업복) ① 공단은 근로자에게 작업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업에 적합한 작업모 및 작업복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작업복은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55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 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6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공단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언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공단은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게시간의 연장
3.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고객응대근로자가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단은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보건기준) 공단은 「안전보건규칙」을 기초로 하여 작업장의 조명, 정리, 정돈, 청소, 분진, 예방온도, 습도, 환기, 유해물질 취급 등에 관한 보건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8조(보건수칙) 보건수칙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수칙”은 “보건수칙”으로, “안전업무담당자”는 “보건업무담당자”로 본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59조(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①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의 관리 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 및 보건업무담당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하고, 공단 지정 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긴급조치) ① 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 직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인근 지정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 및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 용품을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 · 탈지면 · 핀셋 및 반창고
2. 외사용 소독약
3. 지혈대 · 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의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만 해당)

③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1조(비상연락망) 공단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2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 상태로 보존하며 안전·보건업무담당자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거나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는 사고 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하여야 한다.

⑤ 재해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안전업무담당자(직업병 발생 시는 보건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 보고서와 재해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 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63조(재해분석) ①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에 발생한 재해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매년 1월 중에 전년도에 발생한 재해의 원인 및 부서 또는 작업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여 전 직원 및 각 부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제8장 위험성평가

제64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공단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65조(위험성평가 교육) 공단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공단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공단은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7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 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68조(위험성평가 기록)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측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토록 하고, 최종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제9장 보 칙

제69조(무재해운동) 공단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통합된 노력으로 무재해달성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무재해운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0조(안전·보건 제안) ① 공단은 전 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항상 연구하고 자율적으로 제안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취합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전 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제안함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조(표창) ① 공단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팀 또는 직원에 대하여 수시 또는 안전·보건 강조기간 행사 중에 표창 상신하여 시상

함으로써 안전·보건에 대한 동기를 유발토록 할 수 있다.

② 표창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련 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운동 결과 성적이 우수한 팀 및 개인
3. 안전·보건업무 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제72조(징계) ① 공단은 관련법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공단에 불이익을 초래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② 징계 요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기타 관리감독자 및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자

제73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에서 정한 문서의 기록 보존 이외의 모든 문서에 관한 기록의 보존은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4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공단은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5조(규정의 준수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공단 내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이 규정을 모든 임·직원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알게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은 공단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시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31호, 2022. 1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65호, 2026.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지정서 (제8조 관련)

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소재지	
	근로자수 총 명 (남 명 / 여 명)	전화번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성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선임 등 연·월·일		
전담·겸임구분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성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선임 등 연·월·일		
전담·겸임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지정합니다.

년 월 일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직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3.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관 리 감 독 자 임 명 장(제9조 관련)

소 속 :

직 책 :

성 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관리감독자로 임명합니다.

1.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산업보건의 및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7.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8. 그 밖에 해당 작업장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및 별표 3)

년 월 일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제28조 관련)

부 서 명					일 자		
교육구분	1. 신규채용자 교육 () 2. 작업내용변경시교육 ()		3. 안전보건특별교육 () 4. 정기교육 ()		5. 관리감독자교육 () 6. 기타 ()		
교 육 인 원	구분	계	남	여	기타 특이사항		
	교육대상 근로자수				* 미실시 사유: 명 - 교육과전: 명 - 출산휴가: - 병가:		
	교육실시 근로자수						
	교육미실시 근로자수						
교 육 내 용	과목 또는 사항	교육방법	교육내용의 개요		교육시간	사용교재 등	
교 육 강 사 및 장 소	직위(직책)	성명	교육장소 및 방법		비 고		